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478
----------	-------

발의연월일 : 2026. 9. 21.

발 의 자 : 양부남 · 이광희 · 이해식
박정현 · 이훈기 · 이상식
이개호 · 안도걸 · 서삼석
조계원 · 이주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민선 9기 역사상 최초 시·도 통합 사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5
극 3특 자치분권의 선도모델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국가균형발전
의 중심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이 필요함.

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역의 행정수요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
응하고, 지역주도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역 현장과 밀접한
사무를 통합특별시가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기능을 확
대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 국토관리, 중소기업, 해양수산, 환경 등 특별지방행정기
관이 수행하는 지역 현장 중심의 사무와 이에 수반되는 권한을 통합
특별시로 이관하고, 이관된 사무가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
도록 중앙행정기관과 통합특별시간 협력 및 점검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종전의 전남 및 광주에 설치된 특별지방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통합특별시를 관할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도 이관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 나. 국토관리, 중소기업, 해양수산, 환경, 고용·노동 등 분야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사무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에 우선적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함(안 제19조의3).
- 라. 「어촌·어항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함(안 제19조의4).
- 마. 「도로법」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설계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이관하고, 통합특별시 관할 구역 내 일반국도 중 일정 구간의 도로공사 및 유지·관리 업무를 통합특별시장이 수행하도록 함(안 제19조의5 및 제19조의6).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으로 하고, 지역 내 대학 등과 협력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계획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지역중소기업인력지원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7 및 제19조의8).

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관된 사무의 집행 실적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언·권고 또는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통합특별시와 소관 중앙행정기관 간 상호 협력 체계를 마련함(안 제21조의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전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설치되어 있는”을 “통합특별시를 관할하는”으로 한다.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우선 이양대상사무) 국토관리, 중소기업(벤처투자·수출·공정경제·지역중소기업지원사업조정·재해중소기업·중소기업고객지원실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해양수산(국가어항 건설공사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고용(제19조의3에 따라 이양되는 사항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로 이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권한의 이양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의3(고용노동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 다음 각 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하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2제4호·제5호,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의2제1항, 제5

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54조제1항, 제55조제1항·제2항, 제56조제1항·제3항·제5항, 제57조제1항, 제58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59조제1항 및 제63조제2항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제1항제8호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 및 제8조의3

제19조의4(해양수산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 다음 각 호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1. 「어촌·어항법」 제23조제1항(단, 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및 제8항(단,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권한은 제외한다), 제25조, 제25조의3, 제26조제1항, 제4항 및 제7항

제19조의5(국토관리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 다음 각 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1. 「도로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설계(이 경우 국가지원지방도의 설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의6(일반국도의 도로관리청에 관한 특례) ① 「도로법」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있는 일반국도 중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는 구간의 도로 관리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② 국가는 「도로법」 제85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도로의 건설 또는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의7(중소기업지원에 따른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 제26조의6, 제26조의9, 제26조의12(이 경우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소상공인진흥공단 소속 직원을 제외한다) 및 제74조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 사무 중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사무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 내 사무를 통합특별시장의 사무로 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제1항·제4항, 제53조 및 제56조 제6항
2. 「소상공인기본법」 제21조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의2, 제13조 제4항,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2제1항

제19조의8(지방중소기업인력지원협의회의 설치 등) 통합특별시장은 지

방노동관서의 장,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분교를 포함한다) 등의 장과 협력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5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중소기업인력지원계획과 시행계획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중소기업인력지원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이관 사무의 점검 등)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관된 사무가 적정하게 수행되도록 집행 실적 등을 점검하고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통합특별시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조언·권고 또는 지도와 관련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지방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후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8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합특별시로 이관되는 사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은 본인 희망 시 통합특별시 소속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기준 등) ① <u>중전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설치되어 있는 「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이하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소관 사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통합특별시에 이관할 수 있다.</u> 1. 2. (생략) ② ~ ④ (생략) <u><신설></u>	제19조(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기준 등) ① <u>통합특별시를 관할하는-----</u> ----- ----- ----- ----- ----- -----. 1.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u>제19조의2(우선 이양대상사무)</u> <u>국토관리, 중소기업(벤처투자·수출·공정경제·지역중소기업 지원사업조정·재해중소기업·중소기업고객지원실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해양수산(국가어항 건설공사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고용(제19조의3에 따라 이양되는 사항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u>

<신 설>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로 이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권한의 이양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의3(고용노동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 다음 각 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하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2제4호·제5호,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의2제1항, 제5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54조제1항, 제55조제1항·제2항, 제56조제1항·제3항·제5항, 제57조제1항, 제58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59조제1항 및 제63조제2항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제1항제8호

<신 설>

<신 설>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 및 제8조의3

제19조의4(해양수산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 다음 각 호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1. 「어촌·어항법」 제23조제1항(단, 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및 제8항(단,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권한은 제외한다), 제25조, 제25조의3, 제26조제1항, 제4항 및 제7항

제19조의5(국토관리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 다음 각 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1. 「도로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설계(이 경우 국가지원지방도의 설계는 국토교통부장관

<신 설>

<신 설>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의6(일반국도의 도로관리
청에 관한 특례) ① 「도로
법」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할구
역에 있는 일반국도 중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도로공
사와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
한 업무를 도지사 또는 특별자
치도지사가 수행하는 구간의
도로관리청을 전남광주통합특
별시장으로 한다.

② 국가는 「도로법」 제85조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1
항에 따른 도로의 건설 또는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
원할 수 있다.

제19조의7(중소기업지원에 따른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신 설>

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 제26조의6, 제26조의9, 제26조의12(이 경우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소상공인진흥공단 소속 직원을 제외한다) 및 제74조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중소기업부 사무 중 지방 중소기업청장의 사무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 내 사무를 통합특별시장의 사무로 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제1항·제4항, 제53조 및 제56조제6항

2. 「소상공인기본법」 제21조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의2, 제13조제4항,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2제1항

제19조의8(지방중소기업인력지원 협의회의 설치 등) 통합특별시장은 지방노동관서의 장,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신 설>

· 산업대학 · 전문대학 및 기술
대학(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분교를 포함한다) 등의 장과
협력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5조제1항과 제2항
에 따라 수립된 중소기업인력
지원계획과 시행계획을 원활하
게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중소
기업인력지원협의회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의2(이관 사무의 점검 등)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하는 중앙행
정기관의 장은 이관된 사무가
적정하게 수행되도록 집행 실
적 등을 점검하고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통합특별시에 자
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점
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조언 · 권고 또는 지도와 관련
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